

학교법인 예원예술대학교

(2026년 5차 이사회 회의록)

회의소집통보일자		2026년06월29일	
이사정수	8	재 적	6
감사정수	2	이 사	

1. 일 시 : 2026. 07.08.(수) 11:00
2. 장 소 : 법인사무국 이사장실
3. 참석이사 : 차종선이사장, 김성기이사, 김기완이사, 국영희이사, 홍재진이사
4. 참석감사 : 강상욱감사
5. 불참이사 : 김용규이사
6. 사 회 : 차종선이사장
7. 회의안건 : 1) 개방이사 임기 만료 예정에 따른 선임 승인의 건
 2) 개방감사 임기 만료에 따른 선임 승인의 건
 3) 2026학년도 하반기(9월1일자) 전임교원 및 강의전담교원 재임용 승인의 건
 4) 예원예술대학교 규정 개정 승안의 건
 (교직원 복무규정, 교직원 수당지급규정, 교원인사규정).

8. 회의내용

이사장이 이사출석을 확인하니 출석 5명, 결석 1명, 공석 2명으로 성원이 되어 개회를 선언하다. 법인국장에게 전 회의록을 보고하게 하다. 법인국장이 전 회의록을 낭독 보고하니 국영희이사의 동의와 김성기이사가 재청하여, 이사장이 가부를 물으니, 전원이 찬성 “예” 하므로 전 회의록 보고가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언하다.

차종선	김성기	국영희	김기완	홍재진
				강상욱

이 사 장 : (회순을 낭독 상정하고, 이사들의 의견을 물으니 전원 찬성 “예” 하므로, 회순을 채택하다.) 의안 1호 개방이사 임기 만료 예정에 따른 선임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법인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국장 : 개방이사(송용운이사, 양승상이사) 임기 만료 예정에 따른 선임 승인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일 처리하기로 했던 송용운이사 후임으로 추천된 분들의 서류가 미비되어 송용운 이사 후임 이사 선임은 보류하고 다음 이사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방이사 임기는 2026년 07월 04일로 만기가 되었습니다. 사립학교법과 본 법인의 정관에 따라 대학평의위원회에 개방이사 만료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한 결과 양승상이사 후임으로 정진씨와 안태관씨가 추천되었으며, 이사회 결과에 따라 선임되면 임기는 관할청 승인일로부터 5년입니다.

이 사 장 : 법인사무국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승상 이사께서는 임기만료가 만료되었고 연임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여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이사님들께서는 배포해드린 자료를 보시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진이사 :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문서를 보니, 복수추천을 위하여 후임자를 각자 분리하여 추천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 송용운 이사 후임에 대해서는 향후 이사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전 양승상이사의 후임으로 정진씨를 추천합니다. 정진씨는 건실한 사업가로서 지역사회에서 명망이 높은 분이라 앞으로 여러방면에서 학교에 많은 도움이 될거라고 판단하여 추천하였습니다. 개방이사 임기인 5년동안 우리 학교법인과 학교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영희이사 : 홍재진이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정진씨를 새로운 이사로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차증선	김서영	주영희	신기원	홍재진
				강대웅

김성기이사 : 동의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동의와 재청에 대하여 의견을 물으니 전원 찬성 “예”하므로), 의안 1호 개방이사(송용운이사, 양승상이사) 임기만료에 따른 개방이사 선임 승인의 건은 전 양승상이사 후임에 정진씨를 개방이사로 선임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기는 관할청 승인일로부터 5년입니다. 의안 2호 개방감사 임기 만료에 따른 선임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법인국장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법인국장 : 개방감사(최창용감사) 임기 만료에 따른 선임 승인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방감사(최창용감사) 임기는 2026년 05월 07일로 만기가 되었습니다. 사립학교법과 본 법인의 정관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에 개방감사 만료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한 결과 현직 변호사인 임지연씨가 추천되었습니다. 이사회 의결로 선임되는 감사의 임기는 관할청 승인일로부터 3년입니다.

홍재진이사 : 회의자료를 보니, 직업이 변호사로서 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거라 판단되고, 우리 학교법인의 감사에 적합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지연 변호사님이 우리 학교법인의 개방감사로 선임되면 관할청 승인일로부터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3년간 우리 학교법인과 학교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김성기이사 : 임지연 변호사를 우리 학교법인의 감사로 선임하는데 동의합니다.

김기완이사 : 동의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동의와 재청에 대하여 의견을 물으니 전원 찬성 “예”하므로), 의안 2호 개방감사(최창용감사) 임기만료에 따른 개방감사 선임 승인의 건은 임지연씨로 선임되고, 임기는 관할청 승인일로부터 3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안

차종현	김성기	주영익	김기완	홍재진
				강성웅

3호 2026학년도 하반기(9월1일자) 전임교원 및 강의전담교원 재임용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학지원처장 출장으로 인해 기획조정처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처장 : 재임용 대상자는 음악전공 김규희 부교수, 애니메이션&웹툰전공 임소영 부교수, 시각·영상디자인전공 신동은 부교수, 시각·영상디자인전공 김경실 부교수, 교양학부 김규리 부교수, 융합조형디자인전공 김연중 부교수, 글로벌문화예술경영학부 박정훈 부교수, 공연예술전공 김재명 부교수, 융합조형디자인전공 김미진 조교수(강의전담), 게임애니메이션학과 홍남기 조교수(강의전담) 총 10명입니다. 재임용 대상자 10명 모두 평가점수는 재임용 조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재임용 기간은 음악전공 김규희 부교수는 정년으로 인해 2032년 2월 28일까지이며, 김미진 조교수, 홍남기 조교수는 강의전담교수로 2027년 8월 31일까지이며,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2032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포된 자료를 참조하여 궁금한 부분은 질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기이사 : 회의자료를 보니, 학교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를 시행하였고, 대상자 모두 재임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국영희이사 : 동의에 제청합니다.

이 사 장 : (동의와 재청에 대하여 의견을 물으니 전원 찬성“예”하므로), 의안 3호 2026년도 하반기(9월1일자) 전임교원 및 강의전담교원 재임용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 4호 예원예술대학교 규정 개정 승안의 건(교직원 복무규정, 교직원 수당지급규정, 교원인사규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조정처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처장 : 개정하고자 하는 규정은 교직원 복무규정, 교직원 수당지급규정, 교원인사규정입니다. 교직원 복무규정 제8조(근무시간) 5항 다만, 보직교

차 례	김성기	국영희	김기완	홍대인
				김소영

수는 전일 근무로 한다를 삭제하고, 제11조(시간외 근무) 1항에 다만,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34의 일반임기제 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공무원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보직교수(처장, 대학원장)는 보직기간 중 발생한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수정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삽입하고, 교직원 수당지급 규정은 제4조(초과강의료) 단, 보직교수(처장, 대학원장)의 초과강의료는 보직 재임기간 동안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삽입하고, 교원인사 규정은 제3조 강사, 외국인 전임교수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포된 자료를 참조하여 궁금한 부분은 질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재진 이사 : 설명 잘들었습니다. 배포된 자료를 살펴 보았고, 학교에서 개정을 요청한 사항 중 교원인사규정의 개정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직원 복무규정 일부 조항의 개정과 교직원 수당지급규정 중 일부 조항의 개정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사 장 : 그 동안 법인에서는 여러차례 교직원 수당규정에 대한 검토를 학교에 요청하였고, 학교가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검토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교직원 수당 지급 규정을 정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학교에서 교직원 수당 지급 규정의 일부 조항의 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일부 조항의 개정이 아니라 규정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제 수당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국영희 이사 : 홍재진 이사와 이사장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학교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필요하고, 헌신적인 교직원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급여와 수당 지급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 연봉 인상이 어렵다면 수당이라도 공정한 기준에 의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교직원 수당지급 규정 개정의 건과 이와 연계된 교직원복무규정의 개정의 건은 재검토 후 심의를 보류하고 다음 이사회에서 논의하였으면 합니다. 오늘 이사회에서는 교원인사규정의 개정의

차종현	김성기	국영희	김기원	홍재진

건만 의결하자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홍재진 이사 : 동의에 제청합니다.

이 사 장 : (동의와 재청에 대하여 의견을 물으니 전원 찬성“예”하므로), 의안 4호예원에
술대학교 규정 개정 승인의 건(교직원 복무규정, 교직원 수당지급규정, 교원인
사규정) 중, “교원인사규정 개정의 건”은 동의와 제청이 있었으므로 승인하기
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고, “교직원 복무규정 개정의 건”과 “교직원 수당지급
규정 개정의 건”은 심의를 보류하고 재검토 후 다음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의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다른 안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이 사 장 : 다른 안건이 없으시면, 본 이사회는 금일 12시 20분에 폐회하며, 참석하여 주신
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이사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 결의사항

1) 전 회의록 의결

2) 개방이사(송용운이사, 양승상이사) 임기만료에 따른 개방이사 선임 승인의 건

- 전 양승상 개방이사 후임으로 정진씨 선임 가결
- 임기는 관할청 승인일로부터 5년 가결

2) 개방감사(최창용감사) 임기만료에 따른 개방감사 선임 심의의 건 : 임지연

- 임기 : 교육부 승인일로부터 3년

3) 2026년도 하반기 전임교원(강의전담교원) 재임용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의결

4) 예원예술대학교 규정 개정(교직원 복무규정, 교직원 수당지급 규정, 교원인사규 정) 승인의 건 : 교직원 복무규정 개정 승인의 건과 교직원 수당지급 규정 개정 승인의 건은 재검토 후 다음 이사회에 상정하고, 교원인사규정 개정 승인의 건

차종진	김성태	주세희	김기원	% 재진
				김성태

은 이를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함

2026년 07월 08일

작성자 : 법인국장 차 종 삼

참석임원	이사장	차 종 삼	차 종 삼
	이 사	김 기 완	김 기 완
	이 사	국 영 희	국 영 희
	이 사	김 성 기	김 성 기
	이 사	홍 재 진	홍 재 진
	감 사	강 상 욱	강 상 욱

차 종 삼	김 성 기	국 영 희	김 기 완	홍 재 진
				강 상 욱